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1
----------	------

제출년월일 : 2002. 4 .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준칙)이 시달되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동 준칙안에 맞추어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여 유사 시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도록 함 (안 제4조).
- 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중 주민자치기능을 우선하여 정하고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을 새로이 정함 (안 제9조).
- 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등을 정하고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함 (안 제10조).
- 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하한을 없애고,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던 것을 추천 또는 선출을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하며, 고문제도를 신설하고, 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함 (안 제17조).
- 마.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함 (안 제17조).
- 바.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 함 (안 제18조).
- 사.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다른 경우 1년이내에 조례에 맞게 변경하도록 함 (안 부칙).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8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2. 3. 26.~ 4. 5.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개정 준칙 (행자부지침 2002.3.7)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동사무소별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당해 동사무소의 여건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기능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하되, 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하도록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별 특성·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4항 중 “계획”을 “설치계획”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한 “수강료”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정수 가능한 “수강료”的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시장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별표에 정한 범위내에서 징수하되, “사용료”的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的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사용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的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的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的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의의 명의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시설 등”을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1월”을 “3월”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심의를 거쳐” 다음에 “당해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를 삽입한다.

제15조중 “운영 등”을 “운영”으로 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를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운영 등에”를 “운영에”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하여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후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동안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및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위원”을 “위원 및 고문”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위원으로서 직무를”을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0조제2항중 “위원”을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중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을 “간사는”으로 한다.

제23조중 “위원은” 앞에 “고문을 포함한”을 삽입한다.

〈별 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자치센터 명칭변경)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주민자치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주민자치과장 강 대 윤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민자치담당 이 규 환
	담당자 성명·전화	박 현 정 (행정 3448)

〔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 (제10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율	감면기준 및 감면율(%)	비 고
시설사용료 (회의실 등)	4시간 이하	30,000원이하		제10조1항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게 될 경우
	4시간 초과시	50,000원이하		"
장비사용료 (음향기기)	1회	20,000원이하		"
문화 · 생활체육 취미 · 교양강좌 수 강 료	월 15시간 이하	15,000원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장애인 50% 감면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월 15시간 초과시	25,000원이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 ----- ----- ----- -----</p>
<p>제4조(설치등) ① (생 략)</p> <p>②동사무소별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p>	<p>제4조(설치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동사무소별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p>
<p>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 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화에 대한 토론, 견의 등 주민자치기능 	<p>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생 략)</p> <p>②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사무소 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④ 시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당해 동사무소의 여건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기능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하되, 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하도록 한다.</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 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_____</p> <p>설치 계획 _____</p>
<p>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p> <p>② 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p> <p>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부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한 "수강료"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전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⑥ 시장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p> <p>③ 사용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 (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별표에 정한 범위내에서 징수하되, “사용료”的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的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④ 사용료 등은 수의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p>
	<p>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p>
제11조(이용등) ①~② (생 략)	제11조(이용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 사용료 등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④(생략)</p> <p><u>〈신설〉</u></p> <p>제14조(보고) ①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설치) 동사무소에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p>	<p>③ _____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 _____</p> <p>④(현행과 같음)</p> <p>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p> <p>제14조(보고) ①_____ —3월————— —————</p> <p>②————— ————— 당해 반기경과후 20일이내에————</p> <p>제15조(설치) _____ 운영 _____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_____</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기능) ① (생 략)</p> <p>1~4. 생 략</p> <p>5. 기타 자치센터의 <u>운영 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u>(신 설)</u></p> <p>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p>	<p>제1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1. ~ 4.(현행과 같음)</p> <p>5. ----- <u>운영에</u> -----</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 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p> <p>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기능 수 행과 관련되어 아전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광활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워으로 위촉한다.</p>	<p>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광활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p>
	<p>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p>
<p>③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p>	<p>③동장은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워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위워장과 부위워장은 위워 중에서 호선하되 위워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p>	<p>④위워장과 부위워장은 위워 중에서 호선하되 위워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p>
<p>⑤위워장, 부위워장 및 위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광활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실력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p>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u>⑥</u>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하여 주요 이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이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u>⑦</u>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② (생략)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p><u>③</u>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p>
〈신설〉	<p><u>④</u>위원회 매월 소정의 시간동안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 및 고문
〈신 설〉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제21조(회의) ① (생 략)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소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u>〈신 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u>
 <u>〈신 설〉</u>	 <u>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u>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u>간사</u> 또는 지정된 <u>공무원</u> 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록) _____ <u>간사는</u> _____
제23조(실비보상등) <u>〈삽입〉</u>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등) <u>고문을 포함한</u> _____